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3. 4.



장 호 섭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장호섭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달서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에서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 치매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,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4월 7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 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장호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92304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4. 7.

발의자: 장호섭, 이선주, 박종길, 황국주,  
정순옥, 최홍린, 박정환, 박왕규

## 1. 제안이유

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지원대상과 지원내용(안 제5조~안 제6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:

- 가. 관계법령: 「치매관리법」 제6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치매의 예방·관리
2.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3. 치매환자의 치료지원·보호 및 관리
4. 치매에 관한 홍보·교육
5.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대상)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1. 60세 이상인 사람

2. 치매환자 및 그 가족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“치매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매검진사업,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
2.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
3.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
4.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
5.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
6.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,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치매관리법

제6조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치매의 예방 ·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
2.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3. 치매환자의 치료 · 보호 및 관리
4. 치매에 관한 홍보 · 교육
5. 치매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개발
6.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
7.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
8.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· 단체 · 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치매안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
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
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
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
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
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
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
6의3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

6의4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

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,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,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,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

1의2.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,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
- 1의3.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드는 비용
2.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· 홍보에 드는 비용
3.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· 훈련에 드는 비용
4.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· 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·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